

1. 개정 이유

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 의료사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20. 7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0 제1호 1) 표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7월 31일”을 “2021년 1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 10 제1호 3) 표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7월 31일”을 “2021년 1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